제128회 정 례 회 2005. 12. 20(화) 10:00 총 무 위 원 회

檢 討 報 告

1.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專門委員 鄭樂春

예산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 검토보고 -

□ 제정이유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 함으로써 지역 우수학교 육성과 아울러 우수한 지역인재 배출로 미래로 도약하는 예산군을 건설해 나가고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학교에 설치 되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정함(안 제2조)
- o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매 회계 연도마다 군세 수입액의 2%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교육경비 보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안 제4조)
-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사업 선정,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함.(안 제8조)

□ 관련법규

- ㅇ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7025호 : 2000. 12. 27)

□ 검토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학교 육성과 아울러 우수한 지역 인재 배출을
 목적으로 보조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를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군의 경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76억원으로 인건비 예산액 353억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2006년도 예산액 중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이 4억 9,615
 만원으로 동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군세 수입액의 2% 범위
 내로 정할 경우에는 지원 한도액이 3억 3천만원으로 동 조례안과 2006년
 도 예산편성액간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3조에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u>당해 회계연도</u> <u>군세의 2%범위내로 규정</u>하고 있는데, 지원근거 법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u>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간접적으로 포함</u>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郡稅<u>로 한정한 의미와 2%범위로 설정한</u>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예산군 보조금관리조례"제17조로 명시되어 있지만 조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사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삽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o 동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예산군수로부터 군에서는 "<u>교육경비 예산</u> 지원이 불가하며 일부 제한적으로 급식비 및 체육시설 보강을 지원하고 있음"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우리 군이 도내 16시·군중에서 2005년도 예산기준으로 11번째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13.9%로 郡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동 조례안 제정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68호 제출일자 : 2005. 12. 16 . 발 의 자 : 이한두의원외 2인

□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교육 행정체제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 우수학교 육성과 아울러 우수한 지역 인재 배출로 미래로 도약하는 예산군을 건설해 나가고자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에 설치 되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정함(안 제2조)
- o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매 회계 연도마다 군세 수입액의 2%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o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교육경비 보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4조)
-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사업 선정,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함.(안 제8조)

□ 관련법규

- ㅇ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7025호 : 2000.12.27)

예산군조례 제268호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군세(세외수입 제외)의 2%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위원은 군 과장급 공무원 2인, 군의회의원 2인, 예산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 이내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⑤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정기회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보조금지원 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의 신청)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 3.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2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
 -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③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 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 3.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업에 대한 보고서
 -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액조서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단 체 장 제출예산액	수 전 감 액	l 안 중 액	수정예산액	비고
총 계	2건	0	1,000	1,000	0	
(주민지원과)	2건	0	0		0	
일반행정비,일반행정비, 종합민원,주민지원, 사업예산,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예당관광지 경관조명 설치	8,400	1,000		7,400	99
일반행정비,일반행정비, 종합민원,주민지원, 예당관광지 사업예산,보조사업, 경관조명 설치 시설비및부대비,감리비		△8,400		1,000	△7,400	100

계속비사업 변경승인 조서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u>-</u> ,,	2	2003년도 이전		2004년도			당해연도 계 획 액	금후계획액		
	사 업 명 	총 액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계 획 액 (2005)	2006	2007이후
당초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기반 조성사업	26,329,095	22,403,428	12,099,949	10,303,479 (15,900)	3,420,902	643,156	13,081,225	504,765	4,904,115	12,491,962
변경	덕산온천 관광지 2차 지구기반 조성사업	26,329,095	6,002,670	2,846,154	3,156,516 (15,900)	1,304,682	1,135,563	3,325,635	2,463,186	4,904,115	11,654,442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단 체 장 제출예산액	수 정 감 액	안 중 액	수정예산액	비고
총계	1건	△837,520	△837,520		0	
(경영문화관리실)	1건	△837,520	△837,520		0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837,520	△837,520		0	83

[특별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단 체 장 제출예산액	수 정 감 액	안 증 액	수정예산액	비고
총계	1건	△746,329	△746,329		0	
(경영문화관리실)	1건	△746,329	△746,329		0	
경제개발비,지역경제개발, 경영및관광관리,관광관리, 경상예산,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부족환지청산금	△746,329	△746,329		0	84